

# 예 산 총 칙



# 예산총칙

제1조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44,219,048,802	600,000,000
일반회계	31,342,459,847	500,000,000
특별회계	12,876,588,955	100,000,000
공기업특별회계	1,683,407,992	100,000,000
(1) 수도사업특별회계	818,000,000	50,000,000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65,407,992	50,000,000
기타특별회계	11,193,180,963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780,063,821	
(4) 교통사업특별회계	1,599,337,801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61,809,647	
(6) 주택사업특별회계	2,899,306,916	
(7) 도시개발특별회계	1,784,130,273	
(8) 균형발전특별회계	143,711,624	
(9)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8,001,191	
(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42,350,284	
(11)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6,209,811	
(12) 소방특별회계	918,259,595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34,675,000천원
(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1,000,000천원
(3) 주택사업특별회계	280,000,000천원
(4) 도시개발특별회계	173,220,000천원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음.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9,025,822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119,025,822천원
(2) 목적예비비	20,000,000천원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2)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